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3. 12.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의 안	2003
번 호	-87

1. 개정이유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개정표준안의 통보로 김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감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했던 것을 수익사업인 관계로 도시계획세를 50% 경감으로 조정함(안 제5조)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했던 것을 상업용 부동산까지 확대하여 감면대상에 포함(안 제9조 제1항)
-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했던 것을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주택용 부동산까지 확대함(안 제11조)
-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하여 형평성 유지(안 제13조)

-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1000분의3을 감면하던 것을 5년 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감면기간을 3년으로 단축 조정함(안 제14조)
-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5년간 면제하던 것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50% 경감으로 조정하여 조세형평성 유지(안 제15조)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및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면제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유도(안 제25조 제1호 내지 제2호)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의 양수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및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50%를 경감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유도(안 제25조 제3호 내지 제4호)
- 법인등이 수도권외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까지 포함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 유도함(안 제27조)
-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했던 것을 50% 경감으로 조세형평성 유지(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의 등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3조제2항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5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6조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한다.

제7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1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중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를 “주민공동체가”로 하고,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4조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15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를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하고, 동조단서중 “면제된”을 “경감된”으로 한다.

제16조중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중 “2003년 12월 31일 까지”를 “200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하며,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한다.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조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김제시세감면조례 제370호(2001.3.10) 부칙 제2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2. (생략)</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u>자동차폐차업소</u>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4. (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해당하는 경우에는 -----</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p> <p><u>자동차폐차영업소</u> -----</p> <p>-----</p> <p>4. (현행과 같음)</p>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u>자동차폐차업소</u>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4. (생략)</p>	<p>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해당하는 경우에는 -----</p> <p>-----</p> <p>3. -----</p> <p><u>자동차폐차영업소</u> -----</p> <p>-----</p> <p>4. (현행과 같음)</p>
<p>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p>	<p>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p> <p>-----</p> <p>-----</p> <p>-----</p> <p><u>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u>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u></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u>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u> -----</p>

현행	개정(안)
<p>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 ----- -----</p>
<p>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4. (생략)</p> <p>5. <u>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u></p> <p>6.~7. (생략)</p>	<p>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p> <p>----- ----- ----- ----- ----- -----</p> <p>1.~4. (현행과 같음)</p> <p>5. <u>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u></p> <p>6.~7. (현행과 같음)</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u>주거용 부동산</u></p> <p>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u>주거용 건축물</u>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u>주거용 부동산</u></p> <p>3. (생략)</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p> <p>----- ----- -----</p> <p>1. ----- <u>부동산</u></p> <p>2. ----- <u>건축물</u></p> <p>----- <u>부동산</u></p> <p>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p> <p>③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 -----</p> <p>-----</p>
<p>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p> <p>-----</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공동체가 -----</p> <p>-----</p> <p style="text-align: center;">면제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u>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u>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 ----- ----- ----- ----- ----- <u>3년간</u> -----.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u>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u> ----- -----면제된-----.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u>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u> ----- -----경감된-----.

현행	개정(안)
<p>제2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u>2003년 12월 31일까지</u>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4. (생략)</p>	<p>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p> <p>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u>2006년</u> <u>12월 31일</u>----- ----- ----- ----- ----- ----- ----- ----- -----</p> <p>1.~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p>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

현 행	개 정 (안)
<p>②제1항에서 <u>과밀억제권역안에서</u>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u>과밀억제권역안에서</u>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p> <p>제29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u>사업소세를 면제한다.</u></p> <p>부칙(2001.3.10 조례 제370호) ①(생략)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u>2003년 12월 31일까지</u> 적용한다. ③~④ (생략)</p>	<p>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제1항에서 <u>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u> ----- ----- -----, <u>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u> ----- ----- ----- ----- ----- ----- ----- ----- -----</p> <p>제29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 ----- ----- ----- ----- ----- <u>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부칙(2001.3.10 조례 제370호) ①(현행과 같음)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u>2006년 12월 31일까지</u> 적용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p>